

5. 相續稅 및 贈與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대통령령 제15,509호 1997. 11. 10

주요 골자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사례를 규제하기 위하여 증여의제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

가. 지금까지는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과세대상거래에 부동산 외에 유가증권을 추가함(령 제31조 제2항)

나. 지금까지는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유상증자시 고가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 및 신주를 주주외의 자가 직접 배정받아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령 제31조제2항)

다. 지금까지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취득한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환사채와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사채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동 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최초로 인수하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령 제31조의 3) <법제처 제공>

주요 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1. 주주 1인과 그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 및 제31조제4항·제5항, 제31조의2와 제31조의3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가. 제26호제4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나. 제26조제4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자.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 1인”으로 본다.

다. 제2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제21조제1항 본문 중 “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증여의제 과세대상) ①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 제35조 및 법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32조에서 “간접적으로 무상이전

을 받은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이나 권리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이나 권리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를 통하여 무상이전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중 “재산”을 “재산(제31조의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으로, “시가와”를 “시가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가와”를 “시가의”로 하며, 동제4항 본문중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가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가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은 전환사채를 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호중 “부동산”을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이익의”를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함은 출자·양도 또는 매입하는 재산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29조제2항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실권주 총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또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에서 동항제1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항제1호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29조제2항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자주식총수

3.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제3호의 경우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29조제2항제1호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

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
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
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
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
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②제2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등이 2인이상인 경우
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
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31조의3(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
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
해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
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
사채를 인수·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
는 경우 :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
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
계에 있는 자.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사채
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
우를 제외한다.)로서 신종사채를 취득
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
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취득하는 경
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

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전
환사채”는 각각 “신종사채”로, “전환”은
각각 “전환·인수 및 교환기준가격”으로
보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전환사채
취득일”은 각각 “신종사채의 직접인수·
취득일 또는 신종사채의 취득일”로 분
다.

③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31조의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단서중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
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자본시장육성에 관한법을
제2조제5호”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으로 한다.

제36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중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
으로부터”를 “그 내국법인의 주주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

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당
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자로부터”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2조의2제2호
중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중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
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
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으
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중 “외상대출금”을 “외상
매출금”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신종사채 등의 평가)①법 제6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신종
사채의 평가액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가액과 당해신종사채로써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
권중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
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
액을 차감한 가액으로한다.

제59조제2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에 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율)×평가기준일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평가한

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중 “1주당 순손익액”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